

농식품부,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마련

- AI 사전예방 강화 및 발생시 조기 종식 체계 구축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4. 8. 14)

1. 현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8월 14일 지난 1월 16일 전북 고창에서 최초로 발병하여 18개 시·군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에 대응한 「AI 방역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이번 AI 발생경과 및 특성을 살펴보면, 지난 1.16일 전북 고창에서 최초 발생한 이래 현재까지 18개 시·군에서 총 29건이 발생하였다.

* 예방적 살처분, 역학관련 농가 등을 포함하면 총 212건 이 양성

■ 이번 바이러스는 과거 네 차례의 AI(H5N1)와는 다른 새로운 바이러스(H5N8형)로 전파속도가 느리고 바이러스 배출량이 많은 특징이 있고,

* 과거 : 100% 폐사, 4일간 배출 → 금번 : 20%, 7일간 (오리 실험결과, 검역본부)

- 특히, 방역 여건이 취약한 비닐하우스에서 오리를 사육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발생하여 발생기간이 191일(14.1.16~7.25)로 장기화되었다.

■ 정부는 AI 방역을 위해 '범정부 AI 대책본부'를 운영하였으며, 공무원, 군경 등 약 59만 명의 인력이 동원되어 전국 720여 곳에 이동통제초소가 설치·운영되었으며,

■ 일시이동중지(standstill)를 발령하여 농가 간 수평전파를 최소화하고, 축산농가와 관련 차량이 등록된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속히 역학 농가를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였다.

■ 또한, 가금 농가에 대한 보상방식도 정부 구매 대신 민간자율 비축을 유도하여 수급 왜곡 및 재정소요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

2. 대책 방향

◎ 이번 AI 개선대책은 주변국에서 AI가 상시 발생하는 여건상 언제든지 AI 재유입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사전예방 강화, 발생 시 조기 종식체계 구축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 그간 AI 방역추진 상황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함께 농업인 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및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서, 주요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철새 등 AI 유입요인에 대하여 예찰 강화 및 '위험 알림 시스템'을 운영하고, 철새 군집지 인근 등을 'AI 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여 기존 농가의 방역시설 기준을 보완하며, 신규 축산 농가에 대한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실질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사전 대응체계

를 구축한다.

- **둘째, 계열사 책임방역관리제**도를 도입하여 계열사에 방역책임을 부여하는 한편, 환경 개선으로 축산 체질을 개선하고, 지자체 지도·점검 및 평가를 강화하여 **주체별 책임방역체계를 확립**한다.
- **셋째**, 농가 등의 조기 신고를 유도하고, 과학적 분석을 기초로 방역상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살처분 최소화**를 추진하고, 축산차량만 탐지, 거점소독초소에서 **소독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 **넷째**, 농가 DB 정보 현행화, 축산차량 GPS 등록·관리 강화, AI 발생지역에 대한 방역상황 종합관리 등 ICT 기반의 **역학조사·분석 및 발생 가능지역 예측체계**를 구축한다.
- **다섯째**, 방역 우수·소홀 농가를 차등 지원하는 등 **보상·지원을 구체화·현실화** 하고, 지자체의 살처분·방역 초소 운영 등에 따른 **재정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한다.
- **여섯째**, 농식품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방역 행정체계**를 정비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등 방역기술 지원 조직과의 **역할 및 기능 분담**을 명확히 하며, 지자체에 **적정 수준의 현장 인력 배치**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진한다.

3. 대책 내용

◎ AI 재발방지 및 발생 시 조기 종식을 위한 「AI 방역체계 개선 대책」의 구체적인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다.

① 사전 대응체계 구축

- **(철새예찰체계)** 철새 예찰을 강화*하고, 철새

가 군집지에 도래하면 주변 농가에 신속히 알리는 ‘**철새 AI 위험 알림시스템**’을 상시 운영하는 한편,

* GPS 부착('13년 : 75개 → '14 : 200), 포획검사('14년 : 4천수 → '15 : 5) 등

- 철새 이동경로상 AI 발생국가와 공동연구 및 AI 예찰·발생 정보 공유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 OIE 아태지역 AI 예찰 워크숍('14.8), 한·중·일 가축방역 국제 심포지움('14.11) 등을 활용하여 국제 상시 공조체제 구축 방안 협의 예정

- **(방역관리지구)** 철새 군집지 인근 등을 “AI 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여 농가 지도·점검·지원**과 함께 가금농가의 방역시설 보완*** 및 신규 축산시설에 대한 세척·소독시설 등 허가 기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132개 읍·면·동 1,700농가(전체대비 35%) 35백만 수 (20%) 추정

** 가금질병 컨설팅, 타 지역 이전희망농가 신축비용·입식자금 지원 등

*** 전실·소독시설 설치 의무화 등 축산업허가기준을 일반지역보다 강화

② 농가 등 주체별 방역능력 강화

- **(농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축종별, 도축장 등 축산시설별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고 방역교육을 강화 할 계획이다.

* 예시 : 청결·오염구역 구분, 소독요령, 가축 입식·판매 시 준수사항 등

- **(계열사)** 가금농가의 90% 이상이 계열사 소속인 점을 감안하여 계열사 소속 농가에 대하여 자체 방역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는 “계열사 책임방역관리제도”를 신규로 도입하고,

:: 집중탐구

* 평시에는 정기적으로 소속농가에 방역 교육·지도 및 소독·예찰 실시하고 AI 발생 시에는 발생농가 소독·예찰 및 살처분 지원 등 추진

* 계열사가 농가에 방역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표준계약서 보완, 우수계열사 인센티브 및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지자체 통한 상시점검 등 추진

- **(환경개선)** 방역취약 농가에 대한 시설 현대화와 리모델링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과 함께, 친환경·동물복지 축산 육성을 통한 사육환경 개선을 통해 질병에 강한 축산업으로 체질을 개선하여 나갈 계획이며,

* 조기 시설개선을 위하여 시설현대화자금('14년 : 1,692억 원) 지원조건 완화 검토

- **(점검·평가)** 상설 '중앙점검단'을 운영하여 방역소홀 농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지자체 방역활동 평가*를 통해 책임방역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 검역본부(방역센터)의 지자체 방역활동 평가 결과를 농식품부의 평가에 반영하고 평가결과는 대외공표 및 예산 차등 지원 등

③ AI 발생시 조기종식

- **(조기신고·발견)** 농가 임상교육,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한 AI 조기신고를 유도하고, 신속한 AI 발견을 위해 상시예찰의 확대** 및 오리에서 AI 발생 시에는 출하·이동 전에 AI 정밀검사를 의무화 할 계획이며,

* 조기 의심 신고농가는 양성 판정 시 10% 범위 내에서 살처분 보상금 감액 경감

* 상시예찰 검사확대('14년 : 13만건 → '15 : 26)

- **(방역대·살처분)** 과학적 분석을 기초로 방역상 문제가 없는 것을 전제로, 방역대 설정 및 이동 통제, 살처분 최소화를 추진하되,

- 방역대는 지형 및 역학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설정하고,

* **(현행)** 500m·3km·10km 일률 설정 → **(개선)** 기본틀은 유지하되 위험분석 후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

- 살처분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역대내 일괄 방식에서 선별적 방식*으로 개선하며,

* **(현행)** 500m 또는 3km 예방적 살처분 → **(개선)** 발생농가 살처분을 원칙으로 하되, 방역대내 발생·신고 시기, 축종, 역학관계, 방역실태 등 고려하여 예방적 살처분 실시

- 방역대내 가금 및 알은 안전성 확인 후 출하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 할 계획이다.

* **(현행)** 전부 이동제한 → **(개선)** AI 검사 후 음성인 경우 출하 가능

- **(초동대응)** AI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하여 방역요령(SOP) 숙지 및 지자체의 가상방역 훈련(CPX) 대폭 강화(연 2회 → 분기 1회 이상) 하고, 초동대응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발생 시 현장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대비태세를 구축할 계획이다.

④ ICT 방역시스템 구축 및 신속한 역학조사

- **(통계기반구축)** 신속한 초동방역 조치를 위하여 축종, 사육규모 및 소재지 등 이외 계열화, 외국 인근로자 고용실태, 가축거래기록, 질병발생 상황, 백신접종 실태 등에 대해서도 농가 정보 DB를 구축하고, 방역지원본부 및 지자체를 통해 수시로 최신화(up-date)하고,

- **(종합상황관리)** 모든 방역기관이 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를 활용, 실시간 방역상황을 공유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종합 관제시스템을 구축하며,

- **(역학조사)** 부화장, 농장, 도축장 등 생산에서부

터 유통까지 이력정보를 ICT 기반 DB화하고, 이동통신 위치정보*를 활용한 발생가능지역 예측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KT-농식품부간 "Big Data 기반 가축전염병 확산대응"을 위한 MOU 체결('14.6.25)

- **(소독시설)** ICT를 활용한 거점소독시설 전광판을 설치하여, 축산차량만 탐지 및 선별 소독하는 초소를 운영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⑤ 농가 보상 및 지자체 지원제도 개선

- **(보상지원 현실화)** 친환경, 동물복지인증 축산물에 대해서는 실제 손실에 따라 보상하고, AI 발생농가의 폐기사료 보상을 현실화(시가의 40% → 80%)하는 한편
 - 살처분에 따른 농가의 생계안정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이동제한에 따른 소득안정자금은 실제 피해액이 보상되도록 개선하며,
 - * 닭·오리 2만수, 육계 4만수 이하 농가만 지원 → 전체농가 지원
- **(보상기준 구체화)** AI 발생농가는 20%를 삭감하되, 방역소홀 농가의 경우 추가 감액 기준*을 세분화(건당 5~10%, 최대 80%)하고, 방역활동 우수농가에 대해서는 포상과 함께 살처분 보상금 감액 범위 내에서 경감(건당 5~10%, 최대 50%)토록 하며,
 - * AI 발생농가는 20%를 삭감하되 위반 유형별 추가감액 기준을 현행 5종에서 30여종 세분화하고 연속 AI 발생 농가 추가감액(불입)
- **(지자체 부담완화)** AI 방역비용·보상금 등 대해 방역 책임분담 원칙은 유지하되, 해외 사례 분석 등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자체간(시도 및 시

군구간) 살처분 보상금 분담원칙(5:5) 마련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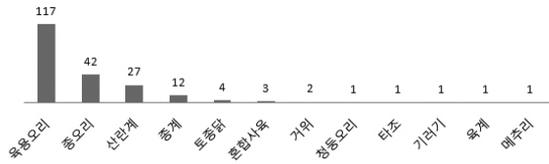
⑥ 방역 추진체계 개선

- **(방역행정)** 중앙의 방역정책 기능을 보완*하고, 지방의 조직 인력을 확충**하며,
 - * 농식품부의 방역정책 총괄·기획 기능을 수행할 방역 조직 강화(현행 과단위에서 수행)
 - ** 시·도는 전담부서 신설, 시·군은 사육규모에 따른 적정인력 배치 추진
- **(진단·연구)** 중앙(검역본부)은 AI 최종확진 및 기초연구에 집중하고 지방(가축위생시험소)*은 AI 1차 검사*** 및 현장연구를 담당토록 할 계획이다.
 - * 가축위생시험소 기능 강화와 역할 명확화를 위한 가축 위생시험소법 제정 추진(현행은 시도 조례로 운영되어 시도별 기능·조직 등이 상이)
 - ** 검역본부의 AI 검사·진단기능을 지자체의 가축위생 시험소로 이관
- **(단속·평가)** AI 전담부서(검역본부) 설치를 통하여 상시 단속 및 평가 기능을 강화하며,
- **(상호연계)** 합동 방역훈련(CPX) 정례화 및 중앙·지방간 방역협의회를 개최하고, 시·도 교차단속 등을 통한 각 기관간 연계 강화 및 AI 발생 시 대응을 효율화 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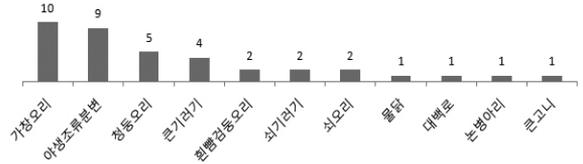
⑦ 연구개발(R&D) 강화

- **(R&D)** AI 국내 유입, 진단 및 방역조치 등 단계별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농식품부 자체연구 및 환경부·미래부 등 부처간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AI 국제협력·연구를 추진할 것이다.
 - 또한, 고병원성 AI 백신 관련 연구·타당성

3. 축종별 발생(육용오리, 종오리, 산란계, 종계 등)



4. 야생조류 발생(가창오리, 청둥오리, 큰기러기 등 38건)



참고 2 | 주요 시 개선방안 우려사항 및 보완책(안)

내용	기 존	개 선	효 과	우려사항	보완방안
살 처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0m 내 전농가 무조건 살 처분 3km는 초기 살 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0m 내 발생 농가 중심 살 처분, 나머지는 위험성 평가·관리 후 예외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살 처분 두수 감소 자원낭비 축소 국민 공감대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속한 예방적 살 처분에 비해 초기대응 미흡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시) 발생시 대응 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대응 중심의 CPX - 전문가 풀 구성·지원 (발생시) 신속한 차단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통제, 발생농장 살 처분, 방역조치 등 완전한 차단방역 - 살 처분(24시간 내) 실시 - 발견·신고시기, 지형, 가금종류, 시설, 역학특성, 방역실태, 평소 방역 수준 등 위험도 분석 후 예방적 살 처분 <p>* 지자체 판단 오류 시 중앙정부 직권 살 처분 명령(가전법 52조)</p>
이동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역대내 가금·알 무조건 이동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역대내 가금·알 제한적 출하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개체 사전 제거 자원낭비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금·알 이동시 수평전파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상·정밀검사 실시 후 음성 확인 가금 운송전용차량 이용 방역대내 및 최단거리 도축장 알은 가공용(열처리)만 허용
소독 및 초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적 모든 차량 소독시설 및 초소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생지역, 전파위험성이 높은 지역에 집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불편 감소 방제비용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파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별 거점 소독시설 설치, 축산차량 소독 실시 지역별·시설별·차량별 세척·소독 실시요령을 마련 관리 상시예찰 규모 확대 철새도래지 등 고위험지역을방역관리지구로 지정·특별관리
방역 관리 지구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없음 * 특별관리기간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도입 특별관리 * 철새도래지, 밀집지역, 과거 발생지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중관리로 사전예방 및 발생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강화 산업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입불가 보다는 강화된 허가기준 제시 * 기존 농가는 충분한 유예기간 설정 희망시 정책자금 지원, 이전유도

:: 집중탐구

내용	기 준	개 선	효 과	우려사항	보완방안
계열사 책임 관리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열사 책임 의식 강화 사전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가에 전가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 등에서 정기 지도·점검 계열사 불공정행위·방역의무 책임전가 방지를 위한 표준계약서 개선 인센티브 제공 및 과태료 부과 방역프로그램을 만들고 자체적으로 시행하도록 계약서에 포함
사육 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역시설 낙 후, 친환경·동물복지 고려가 미흡한 사육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사시설 현대화·리모델링 추진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본적체질개선으로 질병 사전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적 추진 의지 의심 실제 적용 가능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축산대책 지속 추진 축종별 특성을 반영한 방역시설 기준 마련·보급 시설 취약 농가 리스트 구축, 현대화사업 우선지원 계열사가 시설우수농가와 계약토록 지도 계열사가 시설 미비 농가와 계약시 정책자금 지원 제외 동물복지 인증대상 확대('14: 육계→'16: 오리, 메추리 등) 및 친환경 직불금 단가 상향 등 지원 강화
KAHIS 등 I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KAHIS, GPS 차량 관리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IT 활용 체계 정착(현행화,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확 및 신속한 역학조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의 정확성 유지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역지원본부, 지자체 전담인력 지정, KAHIS 정보 현행화 정보수집대상을 소규모농장 확대(300m²→ 전체 축산농가) GPS 장착 차량만 축산농가·시설에 출입토록 의무화 추진
보상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상과 방역 책임 연계가 부족 및 보상금 현실화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 및 소홀 농가 차별강화 지급기준 현실화 * 소득안정 및 생계안정자금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 및 소홀 농가 책임강화 피해보상 현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가의 수용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격합리화를 위해 대표가격 산정체계 구축 및 전문연구 용역 실시 후 현장 적용 동물복지, 친환경 등 가축 및 생산물에 실제가격 지원

참고 3¹ 살처분보상금 감액기준 개편방안(시행령 개정)

구분		현행	개선
양성농장		20% 감액	현행 유지
추가 감액 기준 (양성농장에 한함)			
축산업 허가·등록		-	미등록·미허가(10% 감액)
사전예방	차단방역 기준 (Biosecurity)	-	소독기록부 미비치(5% 감액)
		20% 감액	소독 미실시(5% 감액)
		-	소독액 미교체(5% 감액)
		-	출입기록부 미비치(5% 감액)
		-	출입기록 누락(10% 감액)
		-	농장 전용의복, 신발 등의 미비치 및 불결(5% 감액)
		-	축사 파손방치*(5% 감액) * 쥐 등 출입 방치
		-	사료 잔존물 방치(5% 감액)
		-	축사 내외부 불결*(5% 감액) * 먼지 등 비산
		-	축사 분변 미적정 처리(5% 감액)
		-	의무방역 교육 미참석(5% 감액)
		-	야생동물 방지대책(예; 구서대책) 미시행(5% 감액)
		-	기타 차단방역 기준 미이행 (5% 감액)
	방역시설 기준	-	전실(前室) 미설치(5% 감액)
		-	소독시설 미설치(5% 감액)
		-	신발소독조 미설치(5% 감액)
		-	차량소독조 미설치(5% 감액)
		-	울타리·담장 미설치(5% 감액)
		-	외부인 출입금지 미표시(5% 감액)

:: 집중탐구

구분		현행	개선
	방역시설 기준	-	야생조수류 침입 차단장치 미설치(5% 감액)
	적정 사육밀도 유지	-	축산법상 적정 사육두수 초과분은 보상금 미지급
신고	의심축 신고	신고지연 (20~60% 감액)	신고지연/미신고(50% 감액)
	외국인 근로자	미신고 (80% 감액)	단순미신고 · 소독등 미이행 · 교육미실시는 10% 감액 (단, 가축전염병 발생과 연계시 60% 감액)
	해외 출입국 신고	소독등 불이행 (80% 감액)	
	출생 등 신고	미신고 (20% 감액)	현행 유지
발생 시 조치	검사 등 명령 이행	4개 불이행시 60% 감액	불이행 (5% 감액)
	역학 조사 협조	3개 불이행시 40% 감액	불이행 (5% 감액)
	소독 실시	2개 이하 불이행시 20% 감액	불이행 (5% 감액)
	이동제한 준수		불이행 (5% 감액)
	반복 발생 농가	-	방역 소홀로 동일 농장주 · 농장에서 연속발생 시 추가 감액 (단, 시가 발생하여 종식되기 전까지 2회 발생 시 80% 감액)
	명령 불이행	-	가축방역관 명령(방사 금지 등) 불이행시 추가 감액
인센티브	평시방역 우수농가	-	감액 경감 (10% 이내)
	평시 가축출입기록 및 보고 우수농가	-	감액 경감 (10% 이내)
	평시 전화 예찰 협조 우수농가	-	감액 경감 (5% 이내)
	조기신고농가	-	감액 경감 (10% 이내)
	우수방역 인증농가	-	감액 경감 (10% 이내)
	최초 신고자 (시·군 별)	-	포상금 지급

*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법 시행령 별표 1 및 고시 개정사항

* 기존 시 발생농가 살처분 보상비 최소 20% 지급규정은 폐지

* 양성농가의 감액 경감은 추가 감액된 부분(최대 80%)에 한해서만 경감을 받을 수 있음